

부속서 4-다  
역외가공지역 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한다.

가. 역외가공지역의 필요성 검토

나.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기초로,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결정<sup>1</sup>

다. 원산지 최종상품의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포함한 역외가공지역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수립, 그리고

라. 역외가공지역과 관련된 상품 목록 및 구체적인 절차 작성

2.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.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회합하며, 그 후 최소 연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.

---

<sup>1</sup> 양 당사국의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에 대한 인정,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약속에 따라, 위원회는 한반도의 상황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다.